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	<h1>보도 설명 자료</h1>	
배 포 일	2020. 2. 9. / (총 2매)	담당부서	국립여수검역소
소 장	소 상 문	전 화	061-665-2367
담 당 자	박 상 연		061-665-2369

**“국립여수검역소는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 
유증상자에 대해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음”**

(2월 8일자 파이낸셜뉴스, “구멍 뚫린 항만방역... ‘발열·기침’ 無통보 선박  
거짓말 정황” 보도 관련)

**□ 기사 주요내용**

-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선원이 다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항한 선박을 관계당국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남
- 해당 선박과 대리점이 허술한 변명으로 일관했음에도 검역당국은 기자에게 업체 측 변명을 그대로 전달

**□ 설명 내용**

- 동 선박(BITUMEN EIKO호)은 검역법 제14조에 따라 전자검역을 신청하였으나, 14일 이내 중국(저장성) 기항 선박으로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승선 검역에 준하는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국립여수검역소에서는 해당 선박의 유증상자 3명에 대해서 체온측정 등 검역조사를 실시하였고,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역학적 연관성이 떨어져 ‘사례 미 해당’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- 다만, 동 선박은 고열 등 유증상자(3명)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 고장 등을 이유로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,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

※ 관련법령: 「검역법」 제9조(검역통보), 제41조(과태료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(검역통보 등)